

의안번호	2203109
의 퇴 인	김용태 의원
회 답 일	2024.09.04.
추계번호	24C00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이하 ‘제주국제학교’라 한다)”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4년 현재 제주국제학교는 ‘한국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제주, 브랜섬홀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가 있음¹⁾
 - － 학교별 학생수는 한국국제학교 1,051명,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제주 1,419명,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브랜섬홀아시아 1,209명,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1,189명임('23.10.1.기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법 제9조)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법 제12조)의 심의사항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문기관과 시·도지사가 설치한 전담부서(법 제11조)의 정책대상 등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 학교폭력 조사·상담의 대상(법 제11조의 2), 국가단위의 전문교육기관이나 학교폭력예방센터(법 제6조의2) 및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법 제7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주국제학교’를 ‘학교’에 포함시키는 경우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수당 등 비용과 상담 등 대상 증가에 따른 위탁기관 운영비 증가 등이 될 것이나, 개정안 시행 후 학교폭력발생건수 및 관련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함

- 개정안 시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의 개최횟수 증가 및 수당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등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관련 위탁기관²⁾의 업무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³⁾⁴⁾
- 그러나 현시점에서 제주국제학교에서 발생할 학교폭력 발생 건수 및 이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개최 횟수 등과 피해학생 등을 위한 사업비용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전체 학교수(20,480개교) 및 학생수(5,684,745명)⁵⁾와 제주국제학교의 학교수(4개교) 및 학생수(4,868명)⁶⁾를 고려할 때 증가하는 비용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참고로 해당 위탁기관은 맞춤형 상담(개인, 집단), 심리검사, 학교폭력인식개선교육,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4년 현재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마주봄심리상담센터, 제주심리상담센터 해맑음, 맘편한심리상담센터, 정담모래놀이가족상담소, 다온심리상담연구소 등 7개 위탁기관이 있음

3) 이외에도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국가단위 전문교육기관 등의 업무범위 등이 확대될 수 있음

4)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부서는 ‘정서회복과(학교생활지원팀)’이며, 학교폭력 사안 총괄 1명,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관 2명, 학교폭력 예방담당 1명, 학교폭력 피해전담관 1명, 화해조정 지원관 1명(채용예정)으로 구성됨

5)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교육부 보도자료, 2024.08.30.)

6) 2023.10.1.기준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